
2024년도 사학진흥기금 사업별 설명자료

2024



한국사학진흥재단

KASFO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1. 세입(수입)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1) 기타민간이자수입(사학지원계정)	
54-544	

< 사학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기타민간 이자수입	31,077	28,482	28,482	28,810	28,810	328	1.2

1. 법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제19조(기금의 사용)

<p>제6조 (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p> <p>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한다.</p> <p>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p> <p>제19조 (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p> <p>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p> <p>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용자</p> <p>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p> <p>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p>

2. 수입 개요

- 기타민간이자수입 :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지원된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대학생 주거여건개선을 위하여 SPC(특수목적법인)에 지원된 용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30,023	25,461	28,130	31,077

(2) 기타재산이자수입(사학지원계정)

54-546

< 사학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1,859	1,247	1,247	1,247	1,247	-	-

1. 법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나. 수입 개요

- 기타재산수입 : 융자 대기자금 운용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953	1,125	483	1,859

(3) 기타경상이전수입(사학지원계정)

59-596

< 사학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477	2,010	2,010	2,243	2,243	233	11.6

1. 법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2. 수입 개요

- 융자원리금 연체료 수입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2,431	2,137	2,162	477

(4) 기타잡수입(사학지원계정)

69-691

< 사학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기타잡수입	1,208	1,229	1,229	1,229	1,229	-	-

1. 법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및 제18조(기금의 조성)

제6조 (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2. 수입 개요

- 교직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사업 교육비 수입(수입대체경비)
- 컨설팅 수행을 통한 수행 용역비(수입대체경비)
- 대학 정보화 사업 발생 수입
- 사립학교 위탁 재산 매각 수수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668	217	389	1,208

(5)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사학지원계정)

75-754

< 사학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기타민간 용자원금회수	210,939	137,994	137,994	137,099	137,099	△895	△0.6

1. 법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2. 수입 개요

- 용자원금회수 수입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립학교에 지원된 용자금에 대한 원금수입
 - 대학생 주거여건개선을 위하여 SPC(특수목적법인)에 지원된 용자금에 대한 원금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44,753	180,419	133,551	210,939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사학지원계정)

85-852

< 사학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78,707	39,707	39,707	31,413	31,413	△8,294	△20.9

1. 법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수입대비 지출 잔액으로 '24년도 회계로 이월된 자금
※ '23년도 총수입 - '23년도 총지출(사업비, 인건비, 차입금상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88,934	79,880	52,814	78,707

(7) 기금예수금(사학지원계정)

94-943

< 사학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기금예수금	93,728	136,124	136,124	161,119	99,193	△36,931	△27.1

1. 법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및 제26조(차입)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사학진흥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금 및 주택도시기금 예수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29,512	114,210	78,971	93,728

(8) 기타재산이자수입(청산지원계정)

54-546

< 사학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2	-	-	2	2	2	-

1. 법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8조~제19조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제19조(기금의 사용)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2. 수입 개요

- 전년도 수입대비 지출 잔액으로 '24년도 회계로 이월된 자금
※ '23년도 총수입 - '23년도 총지출(사업비, 인건비, 차입금상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	-	-	2

(9)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청산지원계정)

85-852

< 사학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851	851	851	851	-	-

1. 법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8조(기금의 조성)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수입대비 지출 잔액으로 '24년도 회계로 이월된 자금
※ '23년도 총수입 - '23년도 총지출(사업비, 인건비, 차입금상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	-	-	-

(10) 기금예수금(청산지원계정)

94-943

< 사학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기금예수금	6,482	11,124	11,124	7,221	5,181	△59,012	△53.4

1. 법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및 제26조(차입)

제18조(기금의 조성)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사학진흥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	-	-	6,482

2. 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1) 학교경영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2302-4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2	12	대학규제혁신국	1	050	052
명칭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02	450
명칭	대학자율 역량강화	학교경영지원사업	학교경영지원사업 (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학교경영 지원사업 (수입대체경비)	1,125	1,229	1,229	1,169	1,169	△60	△4.9

4. 사업목적

- (사학교육행정 연수지원) 학교법인·대학 및 산학협력단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사업을 통해 회계·세무·노무 교육 등의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직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기여
- (대학 경영 컨설팅지원) 학령인구 감소 가시화 등 대학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수요 증대에 따라, 사립학교 경영 개선을 위한 자문 등의 대학 컨설팅지원

- (대학 정보화지원) 예산·인력 부족에 따라 대학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재단에서 개발(U-ERP)하여 보급함으로써 사용 대학의 업무 표준화 및 비용 절감 지원
- (사학기관 재산관리지원) 사학기관(학교법인·학교)의 재산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희재산(토지·건물 등)에 대한 매각 등의 관리를 통해 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p>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② 추진경위

- (사학교육행정 연수지원) 대학 회계 특수성에 따라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대학 회계 분야 직무 연수를 시작으로 대학 교직원 대상으로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기여
 - (1998년) 사학기관 경영·재정 전문가 연수사업 시작
 - (2010년) 사이버연수원 구축 및 사이버 연수(e-러닝) 위탁 교육 실시
 - (2020년) 자체 온라인 연수 콘텐츠 개발(4개) 및 운영기반 마련
 - (2021년) 자체 온라인 연수 콘텐츠 추가 개발(4개) 및 실시간·온라인 연수 실시(48회)
 - (2022년) 자체 온라인 연수 콘텐츠 추가 개발(3개) 및 실시간·온라인·집합 연수 실시(79회)
 - (2023년) 실시간·온라인·집합 연수 실시(68회)
- (대학 경영 컨설팅지원)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대학 외부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대학의 생존역량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교육 혁신지원 등에 대한 경영 컨설팅지원
 - (2008년) 대학 경영 컨설팅 사업 실시(1교)
 - (2009년) 대학 경영 컨설팅 사업 지원(4교)

- (2010년) 사립대학법인 선진화 지원 사업(5개 법인)
- (2010년~2014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교육부 위탁사업) 추진(90교)
- (2011년~현재) 대학 경영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42개 사업)
- **(대학 정보화지원)** 열악한 재정 상태로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대학을 주 대상으로 저렴한 사용료를 책정하여 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대학 업무 효율화 지원
 - (2011년)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컨설팅 시행
 - (2011년) 사립대학 회계시스템 개발
 - (2013년) 산학협력단 연구행정시스템 개발
 - (2015년) 사립대학 인사급여시스템 개발
 - (2016년) 사립대학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 **(사학기관 재산관리지원)** 학교법인 책무이행 강화 기초 및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확대 등으로 사학기관 유휴 재산에 대한 처분 활성화에 따라 사학기관에 적합한 부동산 처분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단의 재산관리지원을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
 - (2015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을 통한 사업 근거 마련
 - (2015년~현재) 학교법인 위탁 재산 매각 추진(36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사학교육행정 연수지원) 1998년~계속
 - (대학경영 컨설팅지원) 2008년~계속
 - (대학 정보화지원) 2011년~계속
 - (사학기관 재산관리지원) 2016년~계속
- 사업규모 : 1,229백만원('23년 예산기준)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682	682	1,229	1,229	1,16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학교법인,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소속 교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2)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융자) (28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2	12	고등교육정책실	1	050	052
명칭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61	300
명칭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융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사립학교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100,722	88,522	88,522	69,000	69,000	△19,522	△22.1

4. 사업목적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사립학교 교육환경의 개선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학진흥 도모

< 세부지원사업 현황 >

세부사업	세부 지원 사업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	· 포스트코로나 대응 교육환경 개선(원격교육 인프라 조성 지원, 방역체계 강화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환경 개선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	· 재해 피해 복구 및 방재 지원 · 노후환경 개선 지원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개선 지원
교육지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관련 사업 · 교육여건 개선 지원(교사시설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 교육 설비 및 교재·교구, IT인프라) · 교육시설 확충 지원(교사시설 신축·증축·개축 등)
교육특화지원	· 학교기업, 평생교육시설, 부속병원 관련 사업 - 신·증축 및 개·보수, 기자재 확충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	·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시스템 통합을 위한 IT인프라 구축 등
학교법인 수익용기본 재산 확충	·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매입, 개·보수 및 신·증축 등
운영비 지원사업	· 학교법인, 학교, 부속병원 운영비 지원사업
대환대출	· 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대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및 제19조(기금의 사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용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② 추진경위

- '89. 3. 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정·공포(법률4103호)
- '89. 12. 4 한국사학진흥재단 설립·사학진흥기금 설치·운용 개시
- '00. 1. 1 기타기금에서 공공기금으로 전환(기금관리기본법 개정)
- '06. 3. 2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확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자금 등 기금사용 확대)
- '11. 6. 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

설을 대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및 건물에 한해
 용자지원 등 기금사용 확대)

- '14. 11. 11 교육부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중 하나로 ‘사립대학 시설 구조보
 강 등 개선비 용자지원’이 선정되어 2015년 추가 신청교부터 용자지원
- '16. 8. 25 사립학교 노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확대
- '18. 9. 6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관련 사업 지원 계획 수립
- '20. 9. 18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 계획 수립
- '22. 7. 25 학교법인, 학교, 부속병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확대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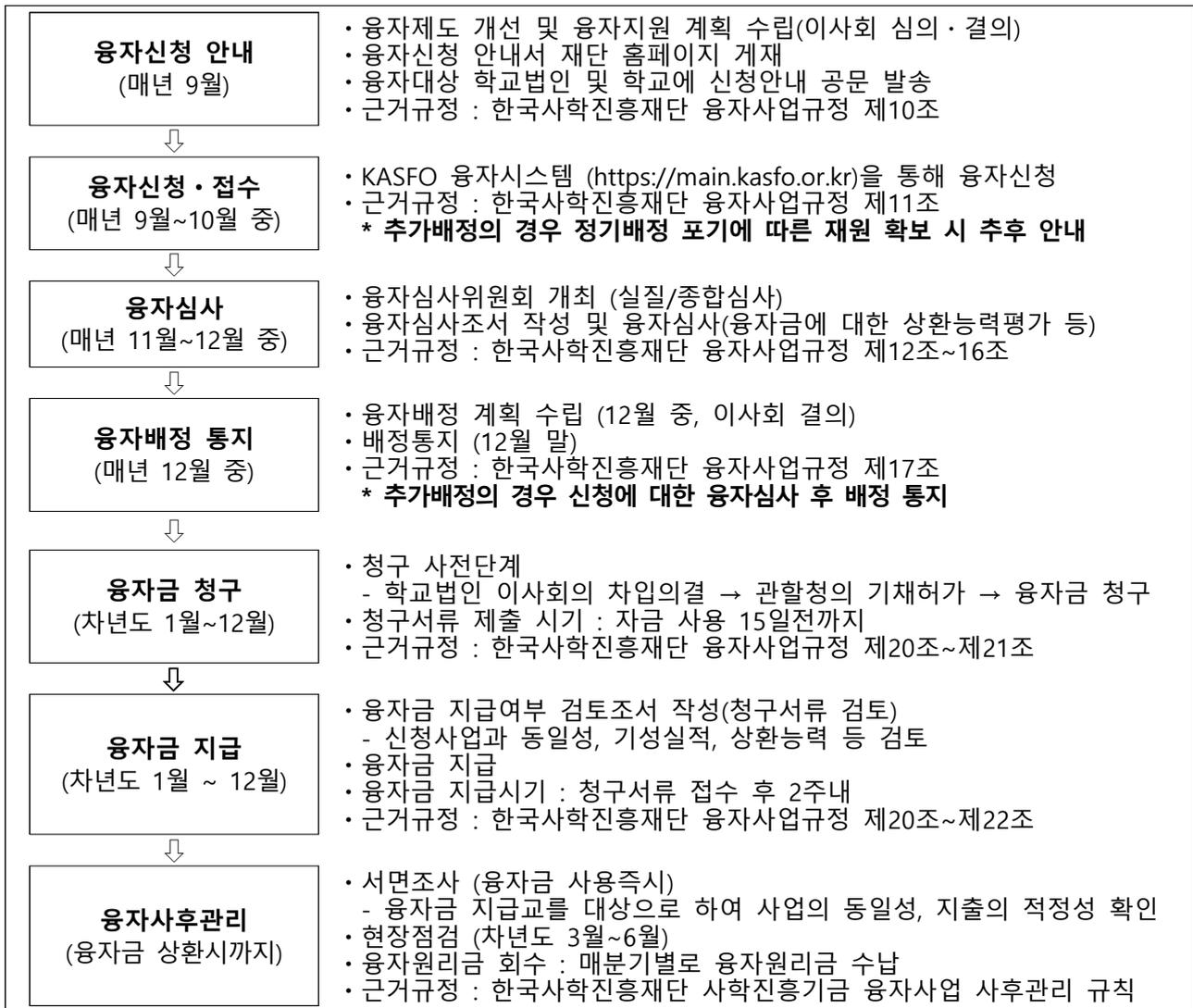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2,000	122,000	100,722	88,522	69,000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유·초·중·고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3)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융자)(28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2	13	교육자치협력안 전국	01	050	052
명칭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61	301
명칭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 융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83,728	70,733	70,733	28,623	28,623	△42,110	△59.5

4. 사업목적

- (행복기숙사지원사업) 대학생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지원하여 주거환경이 좋고, 기숙사비가 저렴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 행복기숙사 유형별 사업개요 >

구 분	행복기숙사(사립)	행복기숙사(연합)	에듀21기숙사(대환대출)	기숙사형청년주택
사업내용	대학 내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비가 저렴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운영	대학 내·외 부지에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운영	既 운영 중인 민자기숙사의 민간자금을 대환하여 절감된 이자액만큼 기숙사비 인하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공급·운영
건립부지	대학 내 교지	국·공유지, 국·공·사립대 및 공공기관 부지 등	대학 내 교지	대학밀집지역 및 역세권
지원대상	사학기관	행복기숙사(연합) SPC	민간투자사업 SPC	행복기숙사(연합) SPC
이자율	연 1.7% 수준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시)			
운영기간	최대 30년 이내		잔여 운영기간내	운영기간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p>제19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p>제19조2(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립)

- 사업 시작년도 : 2012년

- 추진경과

'11. 12.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12.7 대책)
'12. 3.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택도시기금 기숙사지원)
'12. 3.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 시행 기관 지정
'13. 5.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지정 (no 31.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17. 8.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지정 (no 49. 대학생 기숙사수용인원(5만명) 확충)
'22. 5.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지정 (no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22. 12.	행복기숙사(사립) 총 50개 지원

○ 행복기숙사지원사업(연합)

- 사업 시작년도 : 2012년
- 추진경과

'12. 9.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한 사업시행자 및 운영기관 지정(교육부)
'14. 9.	홍제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및 개관
'17. 3.	부경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및 개관
'20. 3.	천안 행복기숙사(연합) 건립 및 개관
~22. 12	행복기숙사(연합) 총 11개 지원(건설 중 8개 포함)

○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대환대출)

- 사업 시작년도 : 2011년
- 추진경과

~22. 12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대환대출) 11개교 지원
---------	---------------------------

○ 기숙사형 청년주택

- 사업 시작년도 : 2019년
- 추진경과

'18. 7.	(정부 정책)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5천호) 공급계획 발표
'19. 3.	기숙사형 청년주택(개봉동) 개관(시범사업) 및 운영
'20. 3.	기숙사형 청년주택(독산동) 개관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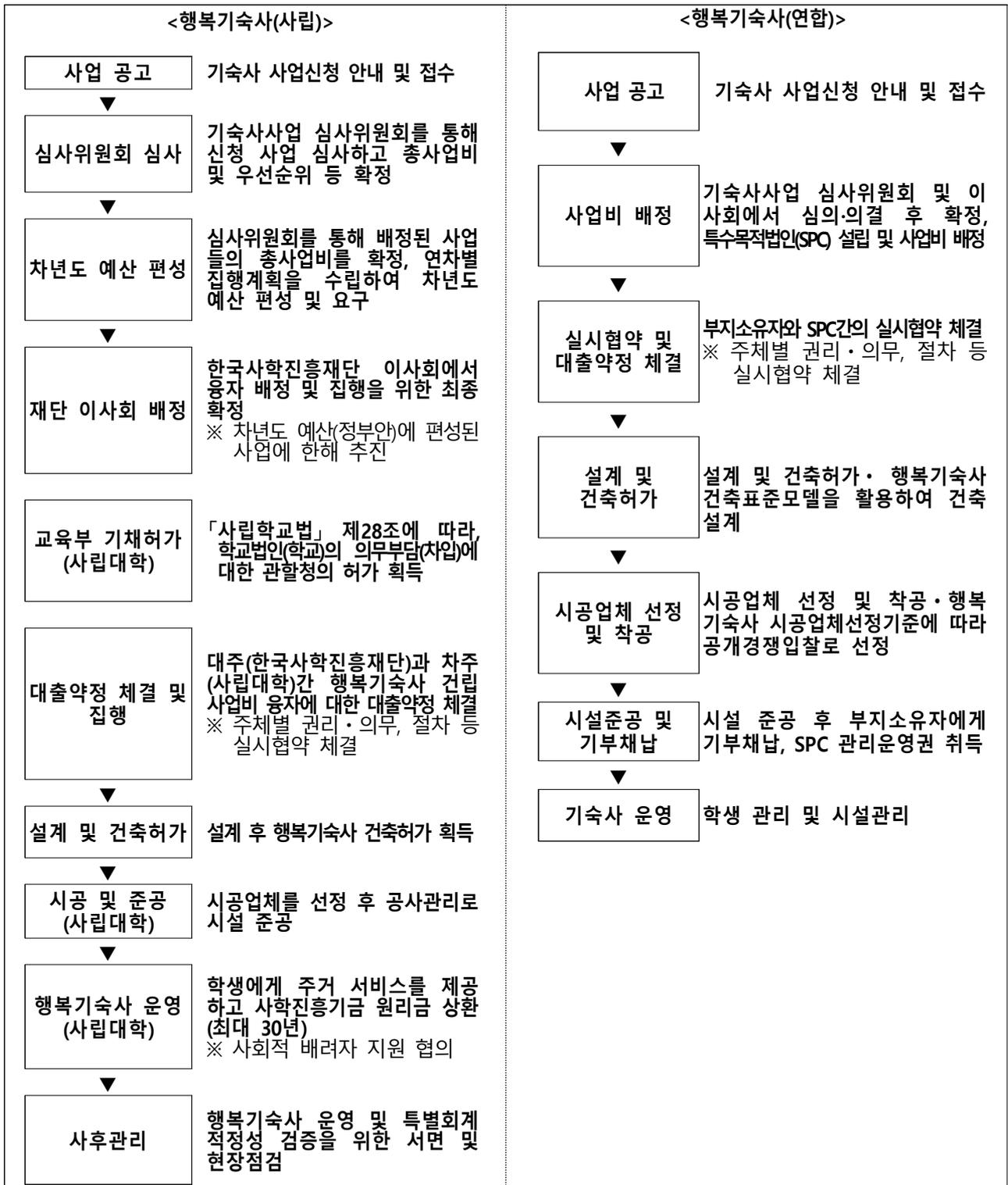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12,908	107,350	83,728	70,733	28,62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용자대상자 :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및 기숙사 특수목적법인(SPC)

- 정책수혜자 : 대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용자) (286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2	050	052
명칭			고등교육정책관	청산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61	305
명칭	대학교육 역량강화 (기금,용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사학진흥기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	6,244	10,650	10,650	6,450	4,450	△6,200	△58.2

4. 사업목적

-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고 폐교대학 발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되어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운영비, 임금채불 등의 채무변제금을 용자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제19조(기금의 사용)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21.8.10, 시행 '22.01.01.>

- 「사립학교법」 제35조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폐교대학 및 해산법인 사후조치 관련 정책연구 추진('17.10.~'18.3.)
 - * 연구명 : 폐쇄(폐지)대학 및 해산법인의 체계적 사후조치 방안 연구
- 정책연구 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18.03.21.)
 - * 주제명 : 폐교대학의 체계적 사후조치 및 법인 청산 방안을 모색한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1차 :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8.06.28, 2차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18.08.31.
- 폐교대학 종합관리 관련 국회 포럼 개최('18.11.15.)
 - * 주제명 : 「한 순간에 버랑 끝」 - 폐교대학 종합 관리 : 진단과 해법
-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매뉴얼 구축 관련 이슈페이퍼 연구 추진('18.12.~'19.4.)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20.3.6.)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20.3.24.) 및 시행('20.9.25.)
-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덕의원 대표발의('21.02.26)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21.8.10.)
-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지원 용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21.8.~'21.12.)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22.1.1.)
-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 지원계획 이사회 의결('22.2.23.)

-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 지원계획 교육부장관 승인('22.3.15.)
- 2023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용자사업 지원계획 교육부장관 승인('22.12.19.)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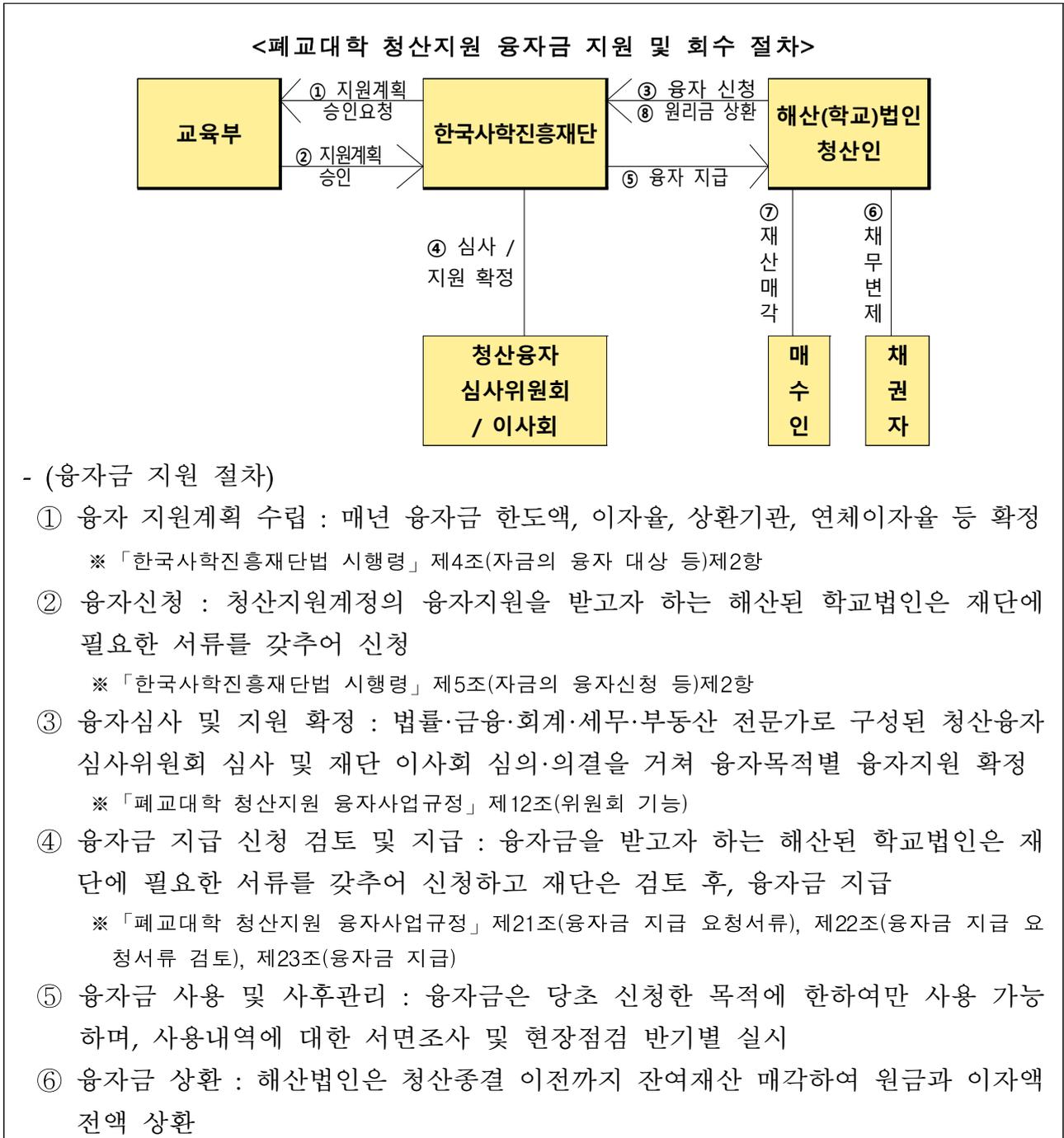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11,442	10,650	6,4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청산인)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 인건비 (2976-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1	050	052
명칭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76	100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인건비	5,536	5,631	5,631	5,894	5,894	263	4.7

4. 사업목적

- 「한국사학진흥재단」 임·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추진경위

- '89. 3. 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정·공포(법률4103호)
- '89. 12. 4 한국사학진흥재단 설립·사학진흥기금 설치·운용 개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188	5,419	5,536	5,631	5,89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6) 기타경비 (2976-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1	050	052
명칭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76	200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기타경비	1,686	1,334	2,915	1,999	1,999	665	49.9

4. 사업목적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5. 기금의 조성·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추진경위

- '89. 3. 3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정·공포(법률4103호)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787	1,980	1,773	2,915	1,999

※ 해당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 계획 변경분을 포함한 예산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7) 대학재정분석 (2976-2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1	050	052
명칭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76	206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대학재정분석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대학재정분석	30	30	30	100	100	70	233.3%

4. 사업목적

- (대학재정분석)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경영환경 변화와 정부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 5.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추진경위

- '95. 3. 14 사립대학 예·결산서 통계처리 분석 위탁(대행 81423-569)
- '96. 9. 20 국·공·사립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접수(대재 81423-115)
- '97. 5. 1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현황 보고의 접수 (대재07000-308)
- '02. 1. 24 사립대학 결산 경영분석기관 지정 (대재 12110-113)
- '04. 12. 15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예·결산서 접수 의뢰(산학협력과-2342)
- '05. 3. 8 사립대학 회계정보공개포털사이트 구축 운영(사학지원과-1471)
- '06. 2. 23 원격대학 예·결산등 재정현황 집계 요청(지식정보기반과-728)
- '06. 4. 20 사립전문대학 재정현황 집계 관련규정 개정(대통령령 19448호)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0	30	30	30	1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8) 정보시스템 운영(사학진흥기금)(정보화) (2978-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1	050	052
명칭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78	250
명칭	기금운영비	정보화경비	정보시스템운영(사학진흥기금)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정보시스템 운영	1,644	1,311	1,311	1,057	1,057	△254	△19.3

4. 사업목적

- 외부 고객 서비스 및 내부 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 보안 S/W 라이선스 갱신, 업무용 SW 및 노후 PC/모니터 등 교체, 공공요금 (교육전산망, 전자정부통신망 등), 장비 수리비 등
- 정보화 장비(서버, 상용SW, 정보보호장비, 환경장비 등) 및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고도화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3조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관리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 추진배경 :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화 관리
 - 업무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화 자원의 유지관리 및 개선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905	1,761	1,311	1,311	1,0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재단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원금상환 (9110-8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1	050	052
명칭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0	841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사학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85,000	110,000	110,000	126,480	126,480	16,480	15.0

4.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원금상환)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6조(차입)

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7년 이후 부족한 사업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9,000	64,000	85,000	110,000	126,4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원금상환 (9111-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1	050	052
명칭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1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예수원금상환(사학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원금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예수원금상환	12,688	14,205	14,205	16,042	16,042	1,837	12.9

4. 사업목적

-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예수원금상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6조(차입)

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13년 이후 기숙사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예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979	9,741	12,689	14,205	16,0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1)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9201-8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1	050	052
명칭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841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사학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0,992	12,015	12,015	8,931	8,931	-3,084	△25.7

4.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6조(차입)

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7년 후 부족한 사업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1,087	16,461	13,472	12,015	8,9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2)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이자상환 (9202-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1	050	052
명칭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2	84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주택도시기금 예수이자상환(사학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이자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예수이자상환	8,880	10,370	10,370	11,272	11,272	902	8.7

4. 사업목적

-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이자상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6조(차입)

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13년 이후 기숙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예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199	8,439	10,718	10,370	11,27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1	050	052
명칭				사학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사학진흥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통화금융 기관예치(사 학지원계정)	106,085	31,413	29,832	30,667	30,667	△746	△2.4

4. 사업목적

- 사학진흥기금 여유자금운용 및 차년도 이월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72,559	117,008	39,508	31,413	30,6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9201-8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2	050	052
명칭				청산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841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사학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청산지원계정)	21	474	474	771	731	257	54.2

4.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6조(차입)

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22년 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비 재원 충당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149	474	7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5) 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2	050	052
명칭				청산지원	교육	고등교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사학진흥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B-A)/A
통화금융기 관예치 (청산지원계정)	220	851	851	853	853	2	0.2

4. 사업목적

- 사학진흥기금 여유자금운용 및 차년도 이월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p>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p> <p>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851	851	85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